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공모 유형	자유 공모형	TRL 단계 * TRL 단계 공모 안내서 참고	TRL 3~5	기술료 납부대상	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시 참조사항	○ 박사학위 취득 후 의료기관 또는 대학 등 기관에서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통해 연구 단절을 최소화 하고, 융합연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목적

-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충족 의료수요 및 난치성 질환 등 극복을 위한 기초·융합연구를 수행하는 젊은 의사과학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마련 및 육성 지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국내 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학,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지원분야	지원대상 요건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면허와 박사학위(M.D.-Ph.D.)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0년(2015년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면허와 박사학위(M.D.-Ph.D.)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5년(2010년 이후 박사학위 취득자)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과제신청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사과학자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지원)을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 본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해당함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1차년도)	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선정 예정 과제수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심화)	2년 5개월 이내(5개월 이내)	300백만원 이내 (125백만원)	30개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리더)	4년 5개월 이내 (5개월 이내) * 단계형 3+2년	500백만원 이내 (208백만원)	22개

※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변동 가능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지원분야	성과목표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SCIE 논문 2편 이상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성과실적 3점 이상, (2단계) 성과실적 누적 6점 이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성과</th> <th>점수</th> <th>구분</th> <th>성과</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논문</td> <td>상위 1% 이내</td> <td>4점</td> <td rowspan="3">특허</td> <td>국내 등록</td> <td>1점</td> </tr> <tr> <td>상위 5% 이내</td> <td>2점</td> <td rowspan="2">국외 등록</td> <td>2점</td> </tr> <tr> <td>상위 10% 이내</td> <td>1점</td> </tr> </tbody> </table> <p>※ 논문은 분야별 IF 상위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 특허 등록 시 PCT 성과는 인정하지 않음</p>	구분	성과	점수	구분	성과	점수	논문	상위 1% 이내	4점	특허	국내 등록	1점	상위 5% 이내	2점	국외 등록	2점	상위 10% 이내	1점
구분	성과	점수	구분	성과	점수														
논문	상위 1% 이내	4점	특허	국내 등록	1점														
	상위 5% 이내	2점		국외 등록	2점														
	상위 10% 이내	1점																	

※ (공통)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하며, 기여율에 따라 성과 실적을 계상.

※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

▶ 특기사항

- (중복지원 제한) 주관연구책임자는 연도별로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세부분야(신진, 심화, 리더) 중 1개 분야에만 지원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사전탈락 대상으로 간주함
- (하향지원 제한) 신진-심화-리더 단계를 기준으로 한 개 분야 수행 후 단계를 하향하여 지원 불가하며, 하향지원시 사전탈락 대상임 ex) 심화단계 수행 후 신진 단계 지원 불가
- (연구개발기관 구성) 1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하여야 함(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 박사학위 세부전공 비임상 과목을 전체 과제 중 50% 이상으로 선정 예정
(임상 전공과목 예시 : 가정의학, 방사선종양학, 비뇨의학, 산부인과학, 소아청소년과학, 외과학, 응급의학, 진단검사의학, 핵의학, 흉부외과학, 내과학, 마취통증의학, 신경과학, 신경외과학, 이비인후과학, 정신건강의학, 직업환경의학, 성형외과학, 안과학, 영상의학,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피부과학)
- 과제 수행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해 주관연구기관 지원의지(기관 확약서 등) 필수 제출
- (공통) 연구시간 확보를 위하여 최소 주중 8시간 이상 연구시간 확보 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 (심화) 연구책임자가 박사 후 연구성장지원 신진분야(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진의사과학자 양성지원 디딤돌 분야 포함) 수행 경험자인 경우 가점(0.3점), 최종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경우 가점(0.5점) 적용
------	---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서면·구두 평가 (심화)	1. 연구개발 계획 (40)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10)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
	2. 연구개발 역량 (3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2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우수성(10)
	3. 연구개발 성과 (30)	○ 연구의 성공가능성(15)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15)
서면·구두 평가 (리더)	1. 연구개발 계획 (30)	○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도(5) ○ 연구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5)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10) ○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
	2. 연구개발 역량 (30)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의 우수성(20)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우수성(10)
	3. 연구개발 성과 (40)	○ 연구의 성공가능성(15) ○ 연구결과의 파급효과(25)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의사과학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공모 유형	자유 공모형	TRL 단계 * TRL 단계 공모 안내서 참고	TRL 3~5	기술료 납부대상	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시 참조사항	○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한 의사과학자(MD-PhD)의 국제적 연구 역량 함양, MD와 기초과학 Ph.D 간 공동연구를 리드하며 중개연구 역량 향상						

▶ 지원목적

- 국내외 의사과학자 중심의 다학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여 질병 기전 규명, 치료제(치료 기술) 개발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지원을 통해 향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과학자 배출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산·학·연·병 모두 가능)
 - * 복수 구성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의사과학자*
 - *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자 중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 과제 구성 요건

- 단독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내 연구개발기관(산·학·연·병)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컨소시엄 구성)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구성
 - * 주관연구개발기관에는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의사과학자(MD-PhD) 필수 구성(신진 의사과학자(MD-PhD)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연구자 참여 필수)
 - ※ 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국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와 박사학위(M.D.-Ph.D.)를 모두 소지한 의과학 융합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 협력기관으로써 해외기관 1개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중 선택하여 신청
 - ※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에 따른 과제구성요건 및 신청방법 등은 공모안내서 참고
- * 본 사업의 해외기관은 해당 기관의 본원과 연구소의 주소지가 해외(미국, 영국 등)인 병원, 연구소, 대학으로 해외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의 인가를 받은 산학연병 소속 연구자여야 하며, 국내 소재 및 국내 소속 연구기관 연구자가 단순 파견, 연구년 등으로 해외 협력기관 소속인 경우는 신청 불가
- * 해외 연구기관 및 해외 연구책임자를 명시하고, 해외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내용(기술협력, 역할분담, 연구비 활용계획, 참여인력동의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일반형”과 “별도 과제형”의 경우,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구성
 - “공동기관형”의 경우, 해외기관이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해외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 * “일반형”과 “별도 과제형”의 경우, 2단계 진입 전까지 국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공동기관형”의 경우, 과제 신청 시 본 연구의 주제 및 참여의사가 확인 가능한 연구협력 양해각서(MOU) 제출 필수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1차년도)	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선정 예정 과제수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최대 4년 5개월(2+3년 이내) (5개월 이내)	1,500백만원 이내 (625백만원)	10개

※ 1차년도 연구기간은 5개월 이내이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연구개발비 변동 가능
 ※ 간접비는 국내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5% 이내, 해외 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38% 이내 계상

▶ 중점 연구 분야

- 의사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우수한 연구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 등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구 분야
-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원천성이 강한 기술을 연구 및 활용하여 공동연구 수행

▶ 성과목표

지원분야	성과목표
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실적 점수 3점 이상 ▪ (2단계) 실적 점수 8점 이상

- 실적 인정 기준
 - (논문) 분야별 IF 상위 10% 이내 1점, 상위 5% 이내 2점, 상위 1% 이내 4점
 - (특허) 국내 특허 등록 1점, 국외 특허 등록 2점, 삼국(미국, 일본, EU) 특허 등록 3점
 - * 국내 특허는 SMART AA 등급, K-PEG A1 등급 이상 인정하며, 특허 중 PCT 성과는 인정하지 않음
- ※ (공통)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에 근거하여 연구개시 6개월 이후 게재 신청 또는 출원된 실적만 인정, Review 논문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으며, 참여인력동의서에 서명한 국내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와 상대국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가 모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포함된 경우만 성과로 인정

▶ 특기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제공동연구 협력기관으로써 해외기관 1개를 반드시 포함하여 과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중 선택하여 신청
-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협업 예정인 해외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기술협력, 업무분담, 참여인력동의서 등)에 대하여 제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분	일반형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
해외기관 참여 방법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계획 등에 따라 해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 수행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국내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각 별도의 과제를 구성하고 연구 내용상으로 협약
수행 방식	연구개발기관 외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
연구개발비 지급 방식	계좌이체 (주관기관이 지급)	계좌이체 (주관기관이 지급)	해외기관에 지급 없음
연구개발 성과 소유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해외기관 기여도에 따른 차등 소유	각자 개발한 결과물은 개별 소유
연구개발 과제 수	3책 5공	4책 6공	3책 5공
간접비	직접비의 5% 이내	(국내기관) 직접비의 5% 이내 (국외기관) 직접비의 38% 이내	직접비의 5%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4.2.6 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24.2) 준용

- 과제접수 시,
 - “일반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에 연구개발비 지급 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변경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협약변경 승인을 득해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참고)
 - “공동기관형”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기관에 과제접수·신청, 협약, 과제수행에 관한 제반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업무를 대행해야 함(위임장 제출 필수)
 - * 협약·계약, 연구성과 귀속/활용,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보완 및 제재처분 등
 - “별도 과제형”의 경우, 해외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마련한 자원의 협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에 목표로 하는 개발 대상인 치료제 또는 치료기술에 대한 프로파일(TPP)*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기반한 마일스톤(정량지표)**을 제시하여야 함
 - * 1단계 연구계획서 작성 시 동일 기술 기반의 복수 제품에 대한 프로파일을 예시 형태로 제시 가능하며, 2단계 연구계획서 작성 시 단일 프로파일 제시
 - ** 마일스톤은 각 연구개발 단계별(TRL)로 달성해야만 하는 주요한 기술적인 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관연구개발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시 협업 예정인 국외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대해서 서술하고 구체적인 공동연구 계획(기술협력, 업무분담 등)에 대하여 제시
 - (1단계 진입 시) 공동연구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등 증빙
 - (2단계 진입 시) 국내외 공동연구 계획에 대한 증빙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이후 해외연수, 출장,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구 공백 발생 시 특별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평가(구두 발표) 시,
 - 해외기관의 연구계획 실시간 발표 혹은 녹화영상(한글 자막 포함) 활용 가능
 - 단, “공동기관형”, “별도 과제형”의 경우에 발표 혹은 녹화영상 제출 필수
- 협약 시,
 - “공동기관형”의 경우, 국제계약서, 비밀유지협약서, 보안서약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제출 필수
- 1단계 종료 2개월 전('26.10.31. 이전) 단계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일반적인 사항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따름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 해당 사항 없음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 항목	소 항목
서면·구두 평가	연구개발계획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 연구개발 목표/추진 방법의 적절성 및 창의성(10) ○ 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연구개발 목표 실현 가능성(10)
	연구개발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역량(10) ○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조직구성 적절성(10)
	공동연구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자 간 상호보완성 및 공동연구 필요성(10)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 정도(5) ○ 공동연구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의 적정성(15)
	연구개발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성과의 적정성(10) ○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제안요청서 (세부사업명)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 (글로벌 의과학자 양성)	공모유형	자유 공모형	TRL 단계 * TRL 단계 공모 안내서 참고	TRL 3~5	기술료 납부대상	X
사업유형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경쟁형 R&D, <input type="checkbox"/> 연구데이터 관리계획 제출대상						
기획 시 참조사항	○ 국내 의과학자가 세계 우수 연구기관에서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연수 기회 지원						

▶ 지원목적

- 첨단 바이오메디컬 분야 연구자의 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 선도기술 보유·연구 중인 해외 의과대학·연구기관 등 기관 방문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최신 연구기법 습득 및 글로벌 연구경험 축적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국내 의과학자의 연구수준 향상 추구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산·학·연·병 모두 가능
 - ※ (단독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복수 구성 및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구성 불가
-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아래 ①, ②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① 기초의학, 공학, 이학 분야 석사 이상인 자 중 바이오메디컬 분야 논문 1편(주저자) 이상인 연구자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과제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하 연구자에 한함**
 - ② 의약학 계열 면허(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취득한 연구자(석사이상)
 - ※ 위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과제공고일 기준 만 43세 이하 연구자에 한함**
- 과제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이중국적자, 외국인 또는 외국 영주권자인 경우
 - 보건복지부 해외연수 사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
 - ※ 단, 과거 유사 연수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연구자 중 최근 2년내 (2023.7월 이후부터 과제 신청 시까지) 연수를 수행한 실적이 없는 경우 과제 신청 가능
 - 연구기간과 군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자)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의과학자 양성 사업/글로벌 공동연구 사업 또는 유사 연수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본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에 해당함
- 일반적인 사항은 공모안내서의 '신청요건' 부분 참고

▶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기간 (1차년도)	연간 연구개발비 (1차년도)	선정 예정 과제수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2년 5개월 이내 (5개월 이내)	200백만원 이내/년 (83백만원)	21개 내외 선정

※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간 지원예산 및 기간 변동 가능

※ 해외 연수 소요기간(최소 2년 이상, 1회 분할 시행 가능)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범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 예정 과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

지원분야	성과목표	지원내용(예시)
의과학자 글로벌 연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메디컬 분야 SCIE 논문(2건 이상) (IF 상위 20% 논문 1편 및 SCIE 논문 1편 이상) - 협약 개시 1년 경과 후 게재 논문에 한함 - 연수 활동 중 수행 연구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이어야 하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실적만 인정함 - 공동저자에는 국내멘토, 해외멘토 중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을 위해 ○○○ 기술을 보유·연구하고 있는 ○○국의 ○○ 기관 연수 - 연수 목적, 연수 후 기대성과, 연수 기관에서의 연수자 역할 및 연구 분야 등 구체적인 연수 활동 계획 제시 - 연수 과정 중 습득 연구기법 및 수행 연구 ○○○에 대해 ○○○저널 게재를 목표로 연구 연수를 수행하고자 함 등의 성과목표 달성 계획 제시

※ 제시된 성과목표는 반드시 포함하고 이외 추가성과를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성과목표 외 분기별 연수활동 보고서, 해외 멘토의 연수활동 평가 보고서(연차보고서), 국내 멘토의 연수 전/후 연구활동 평가 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필수

▶ 특기사항

1. 해외 연수 시행 및 기간

- (해외연수기간) 최소 2년 이상 연수 시행(1회에 한하여 분할 연수 가능)
- 협약 개시일 이후 출국, 협약 종료일 전 귀국을 원칙으로 함(협약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 출국할 것을 권장함)
- 해외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 귀국의무 필수(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미준수 시 연구개발비 전액 환수)
- 연수 종료 후 5년간 연구활동, 진로 등 상태 매년 제출하여야 함(협약 종료 시 별도 안내)
- 연수기간 중 연간(12개월 기준) 15일을 초과하는 체류일에 대해서는 체재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해야 함

2. 연구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 글로벌 연수를 위한 희망 세부 연구분야 및 연수대상 국가/교류협력 기업 또는 기관을 반드시 명시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수대상 기관에 각 1명씩 멘토* 지정
 - * 국내멘토는 연수자 및 연수비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 및 과제수행 관련 멘토링이 가능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와 함께 ‘멘토지정확약서’ 필수 제출하여야 함
- ※ 과제 신청 시 해외 연수기관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기관 정보로 기재하고, 협약 전까지 연수기관 및 멘토에 대해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협약 불가)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율편성 후 집행
 - 단, 동 과제는 연구책임자의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에 한해 편성할 수 있고, 참여인력 인건비는 집행 불가
 - 인건비 단가 상한선은 공고시점의 기준 단가로 과제종료 시까지 유지(25년 기준단가 적용)
 -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 계상’ 가능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숙지 후 인건비 책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연수 관련 연구비 편성]

직접비			간접비
연수자 준비금	체재비	그 외 연구비	
실비 (왕복항공료, 이주관련 경비, 의료보험료, 비자발급 수수료 등)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자율 편성	직접비의 5% 이내

- 연수자 준비금 및 체재비는 연구활동비에 계상
- 체재비의 경우 소속기관의 해외 장기체재 시의 집행 기준을 적용(해외 출장 여비 단가 기준 적용 불가)하며, 소속기관 집행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집행
 -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국외 여비 지급표> 및 제17조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감액(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에 대해 정액의 30%감액) 등 규정 적용
- 해외 연수기간 동안 동 과제의 인건비 계상율은 100%로 하여야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130%로 계상하여야 함
-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3. 기타 주의사항

- 과제 수행 중 협약변경(연구목표, 계획,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추가 연구성과 발생 및 활용 현황 분석 등을 위해 연구성과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기간 내 주관연구책임자의 신분이 변경된 경우 전문기관 사업 담당자에게 사실을 고지하고 연구의 지속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 해외 연수기관 정보 제공 및 과제 선정 후 해외연수활동 지원은 '혁신인재 육성 지원센터(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를 통해 관리·운영됨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협조 필수
 - 혁신인재 육성 지원센터(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 ejs@kamc.kr (글로벌기획협력팀, 02-6952-9684)

▶ 선정평가 기준

적용가점	해당없음	
구분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구두발표 평가	1. 연수 계획(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10) ○ 연수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 ○ 연수 중 수행 과제의 창의성(5) ○ 연수 수행 계획의 충실성(15) ○ 과제구성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10)
	2. 연수 역량(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자의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10) ○ 국외 협력 기관의 우수성·전문성(1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의지(10)
	3. 연수 성과(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 및 협력 연구의 기대효과(10) ○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10)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